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4. 10

제출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대상자를 수정

2.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변경(제7조)
 - 관리대장 보존기간 변경 : 1년→ 2년
 - 변경신고사항 및 신고필증 교부사항 신설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대상 확대(제10조제2항)
 - 100세대 이상 → 20세대 이상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변경(제11조제1항)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중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리터당 11원 ⇒ [별표3]으로 세분하여 징수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 세대당 월1,500원
 -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 객실.객석면적 30㎡이하 월3,000원,
객실.객석면적 31㎡이상 60㎡이하 업소당 월6,000원, 객실.객석면적 61㎡
이상 100㎡이하 업소당 9,000원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대상 수정(제12조제2항)
 -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 감량의무사업장 등

3.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동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의 제2호의 “1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1호]서식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쓰레기를 위탁받아 재활용할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10조제2항중 “100세대 이상”을 “20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리터당 11원으로 한다”를 “[별표3]의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부과·징수업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동주택 지역은 월단위로 부과·징수하고, 관리비 부과일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관리비납부 마감일로 한다.

2. 단독주택지역은 매분기 중간달의 15일현재 주민등록세대주에게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매분기 마지막달의 말일로 한다. 단, 매분기 중간달에 전출입한 세대주에 대해서는 당해분기에 한해 1천5백원을 감면한다.

제12조제2항중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을 “감량의무사업장 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3』

구미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11조 제1항관련)

구분	기준	객실·객석면적	금액	비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세대당		월1,500원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	업소당	30㎡이하	월3,000원	
	업소당	31㎡이상 60㎡이하	월6,000원	
	업소당	61㎡이상 100㎡미만	월9,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음식물쓰레기량 의무사업장 준수 사항) 1. ----- ----- 하여야 한다. 2. ----- -----1년간 ----- 3. (신설)	제7조(----- ---) 1. -----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 ----- 2년간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1호]서식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쓰레기를 위탁받아 재활용할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략) ② ----- 100세대 이상 ----- ③ (생략)	제10조(----- -----) ① (현행과 같음) ② ----- 20세대 이상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리터당 11원으로 한다. ② (생략) ③ < 신설 >	제11조(-----) ① ----- ----- [별표3]의 금액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부과, 징수업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동주택 지역은 월단위로 부과·징수하고, 관리비 부과일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관리비납부 마감일로 한다. 2. 단독주택지역은 매분기 중간달의 15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매분기 마지막달의 말일로 한다. 단 매분기 중간달에 전출입한 세대주에 대해서는 당해분기에 한해 1천5백원을 감면한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 ② -----<u>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 등</u>-----	제1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감량의무사업장 등</u> -----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 신설 >	제13조(-----) ① (생략) ②<u>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신설>	[별표 3] 구미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11조 제1항관련) <table><tr><th>구분</th><th>기준</th><th>객실·객석 면적</th><th>금액</th><th>비고</th></tr><tr><td>공동주택 및 단독주택</td><td>세대당</td><td></td><td>월1,500원</td><td></td></tr><tr><td rowspan="3">감량의무사업장외 음식물쓰레기배출업소</td><td>업소당</td><td>30㎡이하</td><td>월3,000원</td><td></td></tr><tr><td>업소당</td><td>31㎡이상 60㎡이하</td><td>월6,000원</td><td></td></tr><tr><td>업소당</td><td>61㎡이상 100㎡미만</td><td>월9,000원</td><td></td></tr></table>	구분	기준	객실·객석 면적	금액	비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세대당		월1,500원		감량의무사업장외 음식물쓰레기배출업소	업소당	30㎡이하	월3,000원		업소당	31㎡이상 60㎡이하	월6,000원		업소당	61㎡이상 100㎡미만	월9,000원	
구분	기준	객실·객석 면적	금액	비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세대당		월1,500원																					
감량의무사업장외 음식물쓰레기배출업소	업소당	30㎡이하	월3,000원																					
	업소당	31㎡이상 60㎡이하	월6,000원																					
	업소당	61㎡이상 100㎡미만	월9,000원																					